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8.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이고 14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의 마련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370 호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마.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21. 7. 16. ~ 7. 21.)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 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